



시보는 광양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34호(호외) 2021. 8. 26.(목)

공 고

광양시 공고 제2021-1615호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입법예고 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▶ 발행 : 광양시 ▶ 편집 : 홍보소통실 (☎ 797-1944, 행정 1945)

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8월 25일

광 양 시 장

1. 조 례 명: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2. 개정 이유

- 도시재생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추가
-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위탁 규정 신설
-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및 이용료 규정 신설
-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위탁 규정 신설

3. 주요 내용

-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확대(안 제2조)
-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규정 신설(안 제2조의2)

-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(안 제2조의3)
- 공동이용시설 이용료 규정 신설(안 제2조의4)
- 준용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(안 제2조의5)
-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위탁 규정 신설(안 제9조)

4. 개정 조례안: 붙임

5. 입법예고기간: 2021. 8. 25. ~ 2021. 9. 13.(20일간)

6. 의견 제출: 이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(참조: 도시재생과장)에게 (전화 061-797-2432 / 팩스 061-797-2589 / 전자우편 ryusc@korea.kr)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
2.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【붙임 1】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규칙)안 내용	의견	비고

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”을 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”으로 하고 “제3조 제5호에서”를 “제3조제6호에서”로 한다.

제2조 각호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커뮤니티·학습·휴게공간, 게스트하우스, 공동판매장, 공동창고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

5.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제2조의2 내지 제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) 광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.

제2조의3(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) ①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」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“공익 목적의 기준”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
2. 교육, 복지,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
3.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
4.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②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제9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
2.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, 마을관리협동조합 등

3.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

제2조의4(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) ①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는 제5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
2. 관리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

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
2. 도시재생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2조의6(준용)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, 지방자치법, 「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와 「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를 따른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9조제2항 중 “시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”를 “시장이 위촉한다.”로 한다.

제9조 각 항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, 영 제15조제1호 및 이 조례 제11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10조 본문 중 “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”를 “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공동이용시설)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<u>이용에</u>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<u>제3조제5호</u> 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공동이용시설) ----- -----지원----- - 제3조제6호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커뮤니티·학습·휴게공간, 게스트하우스, 공동판매장, 공동창고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</u> 5. <u>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</u>
<u><신설></u>	<u>제2조의2(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) 광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.</u>
<u><신설></u>	<u>제2조의3(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) ① 「도시재생 활성화</u>

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」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“공익 목적의 기준”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

2. 교육, 복지,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

3.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

4.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②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제9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

2.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, 마을관리협동조합 등

3.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

<신 설>

제2조의4(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) ①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는 제5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

2. 관리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

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

2. 도시재생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<신 설>

제2조의5(준용)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, 지방자치법, 「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와 「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를 따른다.

제9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) ①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. 단,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업추진 기간에만 설치 운영한다.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,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③ ~ ④ (생략) <신 설>	제9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) ①-----설치할 수 있다.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위촉한다. ③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, 영 제15조제1호 및 이 조례 제11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제10조(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을 해촉 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	제10조(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해촉) ----- ----- 경우에는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